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무 설치 〉
■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4737호)

2023.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조 문 상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무 설치(최혜영의원안)	2

I. 개요

1. 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473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혜영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3. 9. 26.
- (3) 회 부 일 : 2023. 9.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운영비용과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2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무 설치(최혜영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30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의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30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의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제1항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방법 및 절차, 제3항-- ----- -----

제22조(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략) <u><신설></u> ② (생략)	-----. 제22조(비용 지원) ①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u> <u>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u> <u>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u> <u>데 소요되는 비용</u>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 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 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1) 예산으로 시설·장비비와 운영비가 지원됨.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예산 >

□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국비 50%, 지방비 50%)

- 시설·장비비 : 3.5억원
 - 장애친화 진료실, 입원실, 분만실, 수유실 등 시설 개보수 또는 증축 및 장애특화 편의장비 등 구매
 - 지정 1차년도만 지급
- 운영비 : 1.5억원/년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조건부 승인 이후 지급
 - ※ 1차년도는 최장 1분기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2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안내」 및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및 운영 현황 >

의료기관명	종별	소재지	비고
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서울 종로구	운영 개시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 부산진구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준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종합병원	경기 고양시	운영 개시
예수병원		전북 전주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북 충주시	23. 11. 7. 예정
차의과대학교 구미차병원		경북 구미시	23. 11. 14. 예정
성애병원		서울 영등포구	준비 중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0개소가 지정되어 이 중 6개소가 운영 중이며, 2개소는 곧 운영 예정이고, 나머지 2개소는 운영 준비 중임.

□ 개정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35개소)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장애 여성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방의료원 중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장비,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²⁾

-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산모에 대한 임신, 출산 및 자궁암 등 부인과 종양에 대한 처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있고, 일정한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거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아야 하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함.³⁾

- 그런데 2022년 12월 기준으로 지방의료원 35개소 중 전문의 필수인력 기준⁴⁾을 충족하는 곳이 10개소에 불과하며, 산부인과가

2)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지방의료원 중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곳은 4개소에 불과하고, 14개소는 분만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3) 보건복지부, 「2022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안내」 참조

4) 산부인과 2명, 소아청소년과 1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도 4개소에 달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지방의료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방의료원 산부인과 개설 및 관련 전문의 현황('22.12월말 기준) >

의료기관명	전문의 수			의료기관명	전문의 수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마취통증 의학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마취통증 의학과
서울의료원	6	7	7	청주의료원	2	-	2
부산의료원	1	2	2	충주의료원	1	1	2
대구의료원	1	2	1	천안의료원	1	-	1
인천의료원	1	1	1	공주의료원	1	1	2
경기도이천병원	-	1	1	홍성의료원	3	4	2
경기도수원병원	1	1	2	서산의료원	1	-	2
경기도포천병원	1	1	2	군산의료원	2	1	3
경기도안성병원	1	2	-	남원의료원	2	1	2
경기도의정부병원	1	-	1	진안의료원	1	2	1
경기도파주병원	1	1	2	순천의료원	-	1	1
성남시의료원	1	2	2	강진의료원	3	1	1
원주의료원	2	2	2	목포의료원	1	-	2
강릉의료원	-	1	1	포항의료원	1	-	1
속초의료원	2	2	1	안동의료원	1	-	1
영월의료원	2	1	1	김천의료원	1	1	2
삼척의료원	3	1	1	울진의료원	1	1	2
제주의료원	-	-	-	마산의료원	1	1	1
서귀포의료원	3	2	3				

주) 분원(서울, 인천) 제외

자료: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 한편, 개정안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부분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면서 경과조치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데,⁵⁾ 이는 구법의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효력 범위를 규율하는 경과조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경과조치는 별도로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5년간 332억 5천만원(연평균 66억 5천만원)으로 추계함.

<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안 제7조)	12,250	5,250	5,250	5,250	5,250	33,250	6,650

다.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확대하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함. 다만, 지방의료원 여건 고려 시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은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문 의 처

02)6788-5502

제2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필수 시설, 장비, 인력 기준
-------------	-----------------------------------

구분	주요 시설	실수(개실)	내용
외래	외래진료실	1	－ 환자 공간 내 전동휠체어 이동 및 회전 가능하도록 최소 1.4m×1.4m 공간 확보 필요
	처치실(내진실, 초음파실)	1	－ 진찰대 양옆으로 의료진 및 환자 접근 가능하도록 ¹⁾ 진찰대 및 가구배치 필요 － 탈의 가능하도록 ²⁾ 공간확보 및 시선 차단용 커튼 또는 파티션 설치(또는 별도 탈의실 설치)
분만부	진통실	1	－ 침대 및 분만대 양옆으로 의료진 및 환자 접근 가능하도록 ¹⁾ 장비 및 가구 배치 필요
	분만/수술실	1	
	회복실	1	－ 가족분만실의 경우 진통실, 분만실, 회복실을 충족한 것으로 봄
	보호자 대기	1	
병동부	입원실(1인실)	1	－ 모자동실 권장(단, 모자동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수유실 설치 필수)
	화장실	1	－ 입원실 내 화장실 또는 입원실에서 근접한 공용화장실 중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구비(휠체어 회전 가능, 출입구 단차제거 등)
신생아실	신생아실	1	－
	수유실	1	－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수유실 설치 권장(단, 모자동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 필수)
공통	이동통로	－	－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설치된 층 또는 구역 내의 이동통로는 관련 설비 및 가구설치 공간을 제외한 통로의 최소 유효폭을 1.2m 이상 확보
구 분	장비명	수량(개)	내용
편의기구	휠체어 체중계	2 (외래1, 병동1)	－ 휠체어 타고 체중 측정 가능한 체중계 비치
	특수휠체어	1 (원내)	－ 등받이 부착 자유로운 휠체어(상반신 엑스레이 사용 시 필요)
	이동식 전동리프트	1 (원내)	－ 휠체어에서 검진대로 이동하는 보조 장치(체중계 기능 있을 경우 휠체어 체중계 별도구비 필요 없음)
	전동휠체어 충전기	1 (원내)	－ 전동휠체어 이용 환자를 위한 충전 지원
	성인기저귀 교환대 ³⁾	1 (원내)	－ 휠체어 장애인 환복 시 탈의실 또는 화장실 내 배치(접이식 교환대 가능)
산부인과 검사장비	진찰대	1 (외래)	－ 진찰대 입구에서부터 휠체어를 탄 채 접근가능하며, 진찰대 높이는 휠체어 높이까지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할 것 － 하지마비 환자의 경우, 하지가 충분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 진찰대 양옆으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초음파 침대	1 (외래)	－ 침대 높이 43~48cm까지 낮출 수 있고 침대 옆에 손잡이/사이드 레일 있어야 함
	슬라이딩보드	1 (외래)	－ 침상주변 이동 도울 수 있도록 슬라이딩보드 구비
구 분	장비명	수량(개)	내용
방사선장비	흉부 X-ray	1 (원내)	－ bed type, 상하 또는 좌우 이동이 가능한 건강검진장비(특수 휠체어 있을 경우 별도구비 필요 없음)
입원실	전동침대	1 (병동)	－ 여성장애인 병실(1인실) 내 3모터 전동침대 구비

직종		인원(명)	비고
전문의	산부인과	2	—
	소아청소년과	1	—
	마취통증의학과	1	—
간호사		6	산부인과 외래, 병동(분만실), 신생아실 합산 인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3 ⁴⁾	(자격) 간호사(권장), 사회복지사 등 (지정) 3명 이상 지정하여 부문별(외래, 분만부, 병동) 24시간 공백없는 서비스 제공 필수(신규 채용 가능)
임상병리사		1	—
행정		1	—
방사선		1	—
원무		1	—
약무		1	—

주: 1) 접근 가능한 공간: (직진부) 최소 0.9m 이상, (꺾임부) 최소 1.2m 이상, (회전부) 최소 1.4m×1.4m 이상

2) 탈의 가능한 공간 : 최소 1.8m×1.8m 이상 (단, 구조적으로 어려울 경우 최소 1.4m×1.4m 이상)

3) 불가피한 사유로 탈의실 또는 화장실 내 배치가 어려운 경우, 별도 장소를 마련하면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인정

4)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